

- 담세력,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로 임대·매매용으로 사용되는 농지(제1호, 제5호)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축소
  - 다만, 농업용수 공급 등 공익성이 높은 농업생산기반시설(제1-2호) 및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 사업(제2호, 제3호)은 현행 유지
- (감면 종료) 제1-3호, 제4호, 제4-2호
- 사용용도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관광용지 등으로 사용되거나(제1-3호), 영리성이 강하여 지원 필요성 낮은 개발사업은 종료(제4호, 제4-2호)

## 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3①)
-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(부칙 §3②)

## ② 개정조문

### 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<u>2025</u>년 <u>12월 31일</u>까지 감면한다. 다만, <u>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, 제2호,</u></p>	<p>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20</u> <u>28년 12월 31일</u>-----. ----<u>그 취득일</u>-----</p>